#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언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73 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이언주·양부남·이재강

안태준 • 이상식 • 민형배

이개호 • 문정복 • 정진욱

강준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"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."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소요되고,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,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.

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,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, 개 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(제8조제2항 신설 등).

### 주요내용

- 가.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·품목의 사업을 인수· 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8조제2항 신설).
- 나.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(제17조제1항 신설).

##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"제8조제2항"을 "제8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②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·품목의 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제1항 중 "제8조를"을 "제8조제1항을"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 중 "제8조제2항"을 "제8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15조제2호 중 "제8조제2항"을 "제8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①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대기업등의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 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	제6조(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
회)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	ইব) ①
호 •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	
의 사항을 심의・의결하기 위	
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	
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	
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	
다)를 둔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8조제2항</u> 에 따른 대기업등	2. <u>제8조제3항</u>
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	
인수ㆍ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	
관한 사항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대기업등의 참여제한) ①	제8조(대기업등의 참여제한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
	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
	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
	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
	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
	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	(생	략)
$\overline{}$	` U	1 /

-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시정명령) 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 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·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#### ② (생 략)

1. (생략)

- 제14조(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)
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
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
  런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
  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・
  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
  장부, 서류, 시설 및 그 밖의
 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2. <u>제8조제2항</u>에 따라 대기업등

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

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 <u>④</u> <u>제3항</u>
<u>제8조제1항을</u>
 ②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)
①
 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8조제3항</u>

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

- 3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- 제1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승인을 받은 자

제17조(과태료) <u><신 설></u>

- ① (생 략)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· 징수한다.

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2
제8조제3항
제17조(과태료) ① 제8조제2항을
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
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
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
과태료를 부과한다.
<u> </u>
<u>③</u> 제1항 및 제2항